
특정과제감사 결과보고서

— 의무기록실 연장근로 관련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	---

II. 의무기록실 현황	2
--------------------	---

1. 기본 현황 / 2

2.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진정 현황 / 2

III. 감사결과	3
-----------------	---

1.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품위유지
의무 및 관리자의 성실의 의무 소홀 / 3

2.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허위로 기재한 진술서를 진정 신청 / 5

IV. 조치할 사항	6
------------------	---

V. 참고자료

[붙임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 진정 신청 및
병원 CCTV 확인결과 비교 / 7

[붙임 2] 확인서 / 10

[붙임 3] 문답서 재작성 요청서 및 확인서(확인자 의견
추가) / 23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진료지원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직원의 기강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개요

- 근거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원장) 제2항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17조(원장) 제2항
 - 직제규정 제9조(업무분장) 제8항 제14호
 - 위임전결규정 제12조(특명직무)

◆ 특명직무 수행 : 독립된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원장에게 우선 보고

- 감사대상 : 의무기록실
- 종류 및 실시방법 : 특정과제조사(실지조사)
- 감사기간
 - 1차 : '13. 2. 4 ~ '13. 2. 8(5일간)
 - 연장 : '13. 2. 14 ~ '13. 2. 28(15일간)
- 감 사 반 : 1개팀 2명
 - 반장 : 기획예산팀장, 담당 : 김대인

3. 감사중점

- 의무기록실 시간외 근무 관련 복무사항 등

Ⅱ. 의무기록실 현황

1. 기본 현황

- 인력 : 4명
 - 보건직 2명, 사무직 1명, 고용직 1명(공익 1명 별도)
- 주요업무
 - 신포괄수가제 및 기타 퇴원환자 상병 및 수술 코딩
 - 진료용 및 비진료용 차트 대출, 반납 및 정리 File
 - 입원, 재원, 외래, 퇴원의 각종 인원통계 산출 및 관리
 - 수술 및 상병 통계 산출 및 관리
 - 기타 의무기록실 제반 업무 등

2.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전주시청 진정 현황

- 진정일자 : 2012. 8. 22(진정인 : 한대회)
 - 장윤경 등 3명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 연장근로 현황 : 65회, 139시간 20분(2,225천원 정도)
 - 장윤경 : 36회, 43시간 50분(897천원 정도)
 - 박강희 : 22회, 75시간(1,088천원 정도)
 - 조중현 : 7회, 20시간 30분(240천원 정도)
- 연장근로 기간 : 2012. 7. 2 ~ 2012. 8. 21(38일간)
- 사건 처리결과 일자 : 2012. 11. 16(내사종결)
 - 장윤경 등 3명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 일부 연장근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단체협약서·회사 복무규정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어 내사종결

Ⅲ. 감사결과

1.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품위유지 의무 및 관리자의 성실의 의무 소홀

[현 황]

- 2012년 7월 2일부터 2012년 8월 21일까지 연장근로 총 65회, 139시간 20분에 대하여 병원에서 미지급(2,225천원 정도)했다는 사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 진정을 하였음.
 - 장윤경 : 36회, 43시간 50분(897천원 정도)
 - 박강희 : 22회, 75시간(1,088천원 정도)
 - 조중현 : 7회, 20시간 30분(240천원 정도)
- 진술서 허위기재 현황 : 16회, 21시간 37분(332천원 정도)
 - 장윤경 : 7회, 7시간 36분(154천원 정도)
 - 박강희 : 7회, 7시간 59분(108천원 정도)
 - 조중현 : 2회, 6시간 02분(70천원 정도)

[지적내용]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복무규정 제36조(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에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과 합의에 의해 근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에 직원은 관계법령과 병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 지시에 따르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적내용]

- 인사규정 제51조(징계대상)에 직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의무기록실 장윤경, 박강희, 조중현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과 합의에 의해 근무를 하여야 하는데도,
 - 현황과 같이 병원과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고 병원에서 미지급했다는 사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시청에 허위로 기재한 진술서를 진정하여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음.
- 또한, 의무기록실장 장윤경은 관계법령과 병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병원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의무와 하급 직원들의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자인데도,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직접 노동조합과 상의하여 의무기록실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에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작성하자고 제안하고 직원의 동의를 받았으며, 직원들의 자료를 받아 취합하여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고 직원들과 같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시청에 진정하기로 합의하여 진정하는 등 관리자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음.

2.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시청에 허위로 기재한 진술서를 진정 신청

[현 황]

- 진정 신청현황 : 65회, 139시간 20분(2,225천원 정도)
 - 장윤경 : 36회, 43시간 50분(897천원 정도)
 - 박강희 : 22회, 75시간(1,088천원 정도)
 - 조중현 : 7회, 20시간 30분(240천원 정도)
- 진술서 허위기재 현황 : 16회, 21시간 37분(332천원 정도)
 - 장윤경 : 7회, 7시간 36분(154천원 정도)
 - 박강희 : 7회, 7시간 59분(108천원 정도)
 - 조중현 : 2회, 6시간 02분(70천원 정도)

[지적내용]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규정 제51조(징계대상)에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데도,
 - 현황과 같이 의무기록실 장윤경, 박강희, 조중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시청에 허위로 기재한 진술서를 진정하였음.

IV. 조치할 사항

[조치할 사항]

총무팀장은

- 의무기록실 시간외 근무 관련 복무사항 등 감사 결과, 아래와 같이 적발된 직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오니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기록실장 장윤경은 관리자로서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지키고 부당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병원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연장근무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실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에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작성하자고 제안하고 직원의 동의를 받았으며, 직원들의 자료를 받아 취합하여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고 직원들과 같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 진정하기로 합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 허위로 기재한 진술서를 진정하여 청렴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로 인해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품위유지 의무와 관리자의 성실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 의무기록실 박강희, 조중현은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연장근무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 허위로 기재한 진술서를 진정하여 청렴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로 인해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품위유지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